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30일 05시 02분



##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

2024.03.05 조희수 133 등록자 안지현

□ 신청기간 : 2024. 3. 4. ~ 4. 30.

□ 신청장소(주소지 기준 신청X, 농지소재지 신청)

- 관내 농지 :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
- 관외 농지 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
- 신청 농지가 여러 읍·면에 있는 경우 :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·면에 신청

□ 신청대상 :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○ 지급대상 농지
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
- '98.1.1.~'00.12.31.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)에 이용된 농지
- '12.1.1.~'14.12.31.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- '03.1.1.~'05.12.31.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
○ 지급대상자 : 농업경영체 등록 1,000㎡이상 실경작 농업인

○ 제외대상자

1. 전년도(2023)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
  2. 도시거주자가 관외농지 경작 시 1만㎡ 미만(1만㎡=3,000평)  
예) 목포시 아파트 거주하고 무안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 3,000평이상 지급대상농지를 신청할 경우에만 직불금 신청가능
  3.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(9.30.이전)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 등
- 지급단가(ha당) :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
- 소농직불(130만원), 면적직불(면적구간별 차등지급)

□ 소농직불제 신청 조건(모두 충족)

- 농가의 농업인 경영면적이 0.5ha이하
- 0.5초과~1ha미만인 농가 중 소농직불금(120만원)보다 적게 받게 되는 농가의 경우 소농요건이 모두 충족시 소농직불금 신청 및 가능
- 농가구성원 농지소유면적 1.55ha미만
- 농촌지역거주기간 3년 이상(연속)
-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(연속)
- 농업 외 종합소득(개인 2,000만원 미만, 가구 총 4,500만원 미만)
- 축산업 소득 5,600만원 미만, 시설재배업 소득 3,800만원 미만
- 농가내 1인만 직불금 신청가능(모든 세대원의 정보 작성)

□ 면적직불제 신청(소농직불제 미 충족 시)

○ 1ha이상 경작능가는 면적직불금 신청

□ 부정수급 방지

- 부당신고 접수 센터 연중 운영(시·군·구, 농관원)
- 농업에 미종사, 무단 점유,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행위가 신고 또는 확인된 경우  
→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회수하고 거짓이나 부정방법 수급 시 추가징수 5배
- 등록제한 기간
- 1. 부당신청 시(소농직불 5년, 면적직불 3년)
- 2. 부당수령 시(소농직불 8년, 면적직불 5년)

□ 준수사항 이행

○ 다음의 준수사항 등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

1.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
2.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
3.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
4. 비료 사용기준 준수

5.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
6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
7.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
8.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
9.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
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외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, 목포시 (관내농지) 270-342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목록

이전글

< 「2024 유달산 불축제」 푸드트럭·플리마켓 모집 안..

다음글

목포참여회플라자 직판장 상가 및 위판등 사무실...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